

울산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9가단13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B, C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전은수

변론 종결2021. 3. 17.

판결 선고2021.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8.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접수 제1221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E은 2016. 7. 19. 원고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18. 7. 19., 상환기일 2018. 7. 19., 약정이자율 연 7.79%, 지연이자율 연 10.79%로 정하여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E은 2016. 6.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는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3) E은 2019. 2. 26.부터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채무가 2019. 8. 21. 기준 합계 2,350,677원에 이르고, 2019. 4. 28.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채무가 2019. 8. 21. 기준 83,397,518원(= 원금 80,066,089원 + 이자 3,331,429원)에 이른다.

나. E은 1988. 3. 16.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9. 9. 3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E은 2019.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 소유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1221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은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15,000,000원(= 230,000,000원 × 1/2)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채무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 채무(2019. 9. 3. 기준 116,645,779원)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3, 4, 6 내지 9, 12, 14,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증여받은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와 E은 1988. 3.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와 E은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19. 9. 30.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다.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15,000,000원이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매수 당시 매수자금 용도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경료하여 준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잔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2019. 9. 3. 그 피담보채무인 116,645,779원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하였다. 당시 피고는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G조합로부터 117,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9.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14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9. 8. 7. E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166,807원과 주식회사 I에 대한 채무 17,181,3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취득한 가액은 29,329,004원[= 115,000,000원 - 58,322,889원(= 116,645,779원 × 1/2, 원 미만 버림) - 10,166,807원 - 17,181,300원] 정도이다.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은 혼인기간 중 외도와 도박에 빠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혼의 귀책사유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에게 상당한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J주식회사 등 여러 곳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형성에 상당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생활비, 교육비 등 조달 목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K에 대하여 5,007,140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하여 16,900,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E이 도박, 유흥, 부정행위에 빠져 각종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그렇다면 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없어 E의 개인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와 달리 E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진현지

별지